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042 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 및 공·사단체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,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"를 "취업지원 실시기관(이하 "취업지원실시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"로 한다.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전단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상응한"을 "상응하는"으로,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"을 "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(이하 제33조의4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3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3조의3제1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4(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 지원실시기관(이하 "우수취업지원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 - 2.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⑦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기관의 선정 기준 · 방법 및 절차 등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3조의5(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(이하 "채용·우선고용의무"라 한다)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이 각각 제32조제1항전단에 따른 채용비율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미달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각각 "취업지원 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각각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6호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

하며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경우부터 적용한다.

6의2.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에 관한 확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채용·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는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취업지원 실시기관) 취업	제30조(취업지원 실시기관)
지원을 실시할 <u>취업지원 실시기</u>	취업지원 실시기
관은 다음과 같다.	관(이하 "취업지원실시기관"이
	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	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
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	취업지원실시기관
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	
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	
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	
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	
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)	제32조(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)
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<u>취</u>	① 취업
<u>업지원 실시기관</u> 으로서 기관장	지원실시기관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	
공무원과 일반군무원(이하"일	
반직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임	
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	
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	
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	
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	
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(이하 "채용비율"이라 한다)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33조의2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) ① 제30조제2호에 해 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 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 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<u>상응한</u> 직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 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33조의2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
의무 등) ①
취업지원실시기관
②
<u>상응하는</u>
취업지원실시
<u>기관</u>

할 수 있다.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<u>지정·고시된</u> 공공기관
-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 하는 <u>취업지원 실시기관</u>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
-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<u>취</u> 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 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 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 용하여야 한다.
- 제33조의3(업체등의 신고) ① 제30 조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(이하 "업체등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, 고용직종, 고용인원, 고용기준,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

1
<u>지정·고시된</u>
공공기관(이하 제33조의4에서
"공공기관"이라 한다)
2. (현행과 같음)
3
취업지원실시기관
③ 취업
지원실시기관
<u>.</u>
제33조의3(업체등의 신고) ①
취업지원실시기관

한다.

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4(고용 우수 취업지원실 시기관의 선정 등)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제30조제2호에 해당 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취업 지원 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・사기업체 또는 공・사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 기관(이하 "우수취업지원기관" 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장은 공사・물품・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 지원기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관 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.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

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2.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 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 기관의 선정 기준·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5(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) ① 국가보훈부장 관은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 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취업지 원 대상자 채용 및 우선고용 의 무(이하 "채용·우선고용의무" 라 한다) 이행 실태를 매년 국 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6조(차별대우 금지) ① 취업지 저 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 업자(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・보직(補職)・승진・승급(昇給)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<u>취업지원</u>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
유 없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
위반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
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이 각각
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채용
비율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우
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
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는
그 의무 위반 정도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
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 및
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에36조(차별대우 금지) ① <u>취업지</u>
원실시기관
② 취업지원실
시기관

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취업사실 등의 통보) <u>취업</u>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2. (생략)
- 제37조의2(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) ① (생 략)
 -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·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(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보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.

③
취업지원실시기관
제37조(취업사실 등의 통보) <u>취업</u>
지원실시기관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2(채용 또는 고용인원의
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
$\langle \Delta \rangle$

-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, 제32조,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아니한다.
- ④ 제32조제1항, 제33조의2 및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·2급·3급·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.

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

제77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 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

③	
	취업지원실시
<u>기관</u>	
<u><삭 제></u>	

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

제77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제77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

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
·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
·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
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
 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
 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
 태 확인

<신 설>

6의2. (생략)

7. ~ 14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취업지원실시기관
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-
6의2.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
실시기관의 통보 내용에 관한
확인
<u>6의3</u> . (현행 제6호의2와 같음)
7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